남양주 별내리슈빌아파트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일반분양 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주택과 분양전환주택으로 구성된 혼합주택단지로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분양전환을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공무원연금공단에 명도된 주택"으로, 신규 아파트가 아니며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주택가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85㎡ 이하 국민주택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여 공급하오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자격요건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공고문 p.9~10)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남양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청약 신청 이전에 개방하는 견본주택의 개방일정 및 개방세대를 확인하여 방문해주시고, 당첨자는 당첨자 세대개방일정에 반드시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후 시설물(디지털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샷시, 벽지, 마루,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파손, 노후화 및 청소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요구 및 비용 청구할 수 없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잔금 납부기한(2026. 01. 26. (월))은 계약체결기간(2025. 12. 08. (월) ~ 12. 10. (수)) 만료일로부터 **45일** 이내로, 분양가격에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금액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셔서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 본인의 자격여부 등은 본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의 자격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어 불이익(부적격 당첨취소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2-560-3461, 02-560-2412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국민	경기도 남양주시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3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없음	미적용	공공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 11. 10. (월)	2025. 11. 20. (목)	2025. 11. 21. (금)	2025. 11. 27. (목)	2025. 11. 28. (금) ~ 2025. 12 .2. (화) (주말 제외, 3일 간)	2025. 12. 08. (월) ~2025. 12. 10. (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공무원연금공단)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 10. 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024. 10. 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세대주 요건	-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저축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자 * 청약예·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일 이후의 납입인정분을 합산하여 저축총액 산정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3) 추첨(1순위 당첨자 결정순차가 동일한 경우)	추첨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 03. 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접수일시가 빠른 분이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분은 무효 처리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 12. 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금회 일반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2018. 12. 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결정 순차'에 따라 선정 (①지역 → ②순차 → ③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 12. 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순위순차제를 적용하여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2018. 05. 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geps.or.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 11. 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예·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국민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민영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O		O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 11. 10. (월)**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외국인 제외)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남양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민법」 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으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 11. 20. (목)	2025. 11. 21. (금)	2025. 11. 27. (목)	2025. 11. 28. (금) ~ 2025. 12. 2. (화) (주말 제외, 3일 간)	2025. 12. 08. (월) ~ 2025. 12. 10. (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공무원연금공단 10층 주택실 남양주별내 분양전환 담당자 앞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공무원연금공단 9층 스마트워크센터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합니다.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4호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4호)	3년

■ 2021. 02. 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남양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 **주택개방일정 및 개방세대** **(※ 당첨자 주택개방의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 예정)**

※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 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청약 신청 이전에 개방하는 견본주택을 개방일정에 확인하여 주시고, 당첨자는 당첨자 세대개방일정에 반드시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디지털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샷시, 벽지, 마루,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파손, 노후화 및 청소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일체의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 분	청약접수 이전 견본주택개방 (형별로 개방)			당첨자 주택개방
개방일정	**2025. 11. 17. (월) 14:00 ~ 17:00**	**2025. 11. 18. (화) 10:00 ~ 13:00**	**2025. 11. 18. (화) 14:00 ~ 17:00**	**2025. 12. 01. (월) ~ 2025. 12. 05. (금)**
개방세대	84㎡A (2108동 103호)	84㎡B (2108동 1202호)	84㎡C (2109동 101호)	당첨자별 해당 세대

※ **당첨자는 기타 단지 여건, 세대내부 상태, 마감재 등은 반드시 본인이 세대 개방일에 현장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방일시 이외의 날에는 주택열람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열람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단지에 대한 주차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전·후 시설물 등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본 아파트 공급의 사업주체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입주자 모집합니다.**

■ **공급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 119, 별내리슈빌 아파트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20층 13개동 총 627세대 중 입주자 퇴거로 명도된 주택 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부대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경비실, 주차장 등
- 주차 대수: 939대 (지상: 상가 2대 / 지하: 937대)

■ **입주시기** : 2026년 01월 예정(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2025000530	084.8800A	**84A**	84.88	25.76	110.64	68.36	179.00	66.54	18	2
	084.9600B	**84B**	84.96	25.71	110.67	68.42	179.09	66.61	2	-
	084.9700C	**84C**	84.97	25.93	110.90	68.43	179.33	66.61	14	1
	합 계								**34**	**3**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합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차장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각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표

(단위 : 원, ㎡)

약식표기	동	호	세 대 별 주 택 면 적(㎡)					분양가격(원)			난방방식	입주가능 시기
			공 급 면 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계(100%)	계약금(10%)	잔금(90%)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계약 시	계약 후 1개월 내		
84A (18세대)	2107	203	84.88	25.76	110.64	68.36	179.00	485,000,000	48,500,000	436,500,000	개별난방	'26년 1월 (잔금납부 완료 후)
	2107	404	84.88	25.76	110.64	68.36	179.00	494,900,000	49,490,000	445,410,000		
	2107	503	84.88	25.76	110.64	68.36	179.00	499,100,000	49,910,000	449,190,000		
	2107	803	84.88	25.76	110.64	68.36	179.00	501,800,000	50,180,000	451,620,000		
	2107	904	84.88	25.76	110.64	68.36	179.00	500,300,000	50,030,000	450,270,000		
	2108	103	84.88	25.76	110.64	68.36	179.00	476,100,000	47,610,000	428,490,000		
	2108	403	84.88	25.76	110.64	68.36	179.00	497,000,000	49,700,000	447,300,000		
	2108	504	84.88	25.76	110.64	68.36	179.00	496,700,000	49,670,000	447,030,000		
	2108	704	84.88	25.76	110.64	68.36	179.00	498,500,000	49,850,000	448,650,000		
	2108	903	84.88	25.76	110.64	68.36	179.00	502,700,000	50,270,000	452,430,000		
	2108	1003	84.88	25.76	110.64	68.36	179.00	501,800,000	50,180,000	451,620,000		
	2109	104	84.88	25.76	110.64	68.36	179.00	474,000,000	47,400,000	426,600,000		
	2109	304	84.88	25.76	110.64	68.36	179.00	490,700,000	49,070,000	441,630,000		
	2109	403	84.88	25.76	110.64	68.36	179.00	497,000,000	49,700,000	447,300,000		
	2110	903	84.88	25.76	110.64	68.36	179.00	505,050,000	50,505,000	454,545,000		
	2111	403	84.88	25.76	110.64	68.36	179.00	511,300,000	51,130,000	460,170,000		
	2111	504	84.88	25.76	110.64	68.36	179.00	511,900,000	51,190,000	460,710,000		
	2111	1004	84.88	25.76	110.64	68.36	179.00	517,000,000	51,700,000	465,300,000		
84B (2세대)	2108	1202	84.96	25.71	110.67	68.42	179.09	507,000,000	50,700,000	456,300,000		
	2109	202	84.96	25.71	110.67	68.42	179.09	488,800,000	48,880,000	439,920,000		
84C (14세대)	2101	301	84.97	25.93	110.90	68.43	179.33	510,100,000	51,010,000	459,090,000		
	2101	401	84.97	25.93	110.90	68.43	179.33	514,000,000	51,400,000	462,600,000		
	2101	602	84.97	25.93	110.90	68.43	179.33	521,400,000	52,140,000	469,260,000		
	2101	701	84.97	25.93	110.90	68.43	179.33	520,500,000	52,050,000	468,450,000		
	2107	701	84.97	25.93	110.90	68.43	179.33	503,200,000	50,320,000	452,880,000		
	2108	501	84.97	25.93	110.90	68.43	179.33	499,600,000	49,960,000	449,640,000		
	2109	101	84.97	25.93	110.90	68.43	179.33	476,600,000	47,660,000	428,940,000		
	2109	201	84.97	25.93	110.90	68.43	179.33	485,300,000	48,530,000	436,770,000		
	2109	301	84.97	25.93	110.90	68.43	179.33	493,300,000	49,330,000	443,970,000		

	2110	**801**	84.97	25.93	110.90	68.43	179.33	507,400,000	50,740,000	456,660,000		
	2111	**702**	84.97	25.93	110.90	68.43	179.33	522,600,000	52,260,000	470,340,000		
	2111	**901**	84.97	25.93	110.90	68.43	179.33	522,600,000	52,260,000	470,340,000		
	2111	**902**	84.97	25.93	110.90	68.43	179.33	525,300,000	52,530,000	472,770,000		
	2111	**1002**	84.97	25.93	110.90	68.43	179.33	524,100,000	52,410,000	471,690,000		

※ 상기 공급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주택가격으로 계약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분양계약)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납부기한 내 공급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납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4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신청자격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민법」 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으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 **①지역→ ②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 ③ 추첨** ①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지역(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자가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기타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 말소 기록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② 1순위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항 제1호)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2순위** : ①지역→ ② 추첨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table>
<tr><th colspan="3">필요서류</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able>
<tr><td>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td><td colspan="2">-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
서비스</td><td>청약홈</td><td>-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 11. 27. (목) ~ 2025. 12. 06. (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td></tr>
<tr><td>문자</td><td>- 제공일시 : 2025. 11. 27. (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6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 11. 10.(월))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하여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제출 서류	○		신분증 (방문 시 지참)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을 당첨자(예비입주자)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모두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복무증명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당첨자(예비입주자) 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제출)
부적격 통보 받은경우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추가제출
대리인 방문 제출 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당첨자(예비입주자) 본인 발급분 인감증명서
	○		위임장	본인	• 당첨자(예비입주자) 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 등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체결 기간	계약 장소	비 고
당첨자 계약체결	**2025. 12. 08. (월) ~ 2025. 12. 10. (수)**	▪ 공무원연금공단 9층 스마트워크센터 **10:00~17:00**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공무원연금공단 9층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계약체결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일정 및 시간 변동 시 별도공지 예정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자격검증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공무원연금공단)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분양대금(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 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공급금액)	국민은행	360-01-0017-895	공무원연금공단

※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명**으로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2101동 901호 홍길동 → 2101901홍길동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공급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주체(공무원연금공단)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자격검증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공무원연금공단)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과 지정된 잔금 납부일까지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사오니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11. 10.(월))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신분증	본인	당첨자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지참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계약장소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계약자명으로 입금 후 방문요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인감증명서 : 아파트 계약용으로 당첨자 본인 발급분에 한함 서명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계약만 가능)
	○		인감도장	본인	당첨자 본인 계약 시 서명날인도 가능(배우자 계약 시에는 서명날인 불가)
	○		주택상태확인서, 무주택 서약서 (계약장소 비치)	-	계약당일 계약 장소에 비치된 양식 작성 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계약 시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경우에만 추가 제출
제3자 대리 계약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위임장	본인	당첨자 본인 인감도장 날인한 위임장
	○		인감증명서	본인	당첨자 본인 발급분에 한함(용도 : 분양계약위임용)
	○		인감도장	본인	당첨자 인감도장 지참 (제3자 대리계약 시 서명방식 계약은 불가함)
	○		신분증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지참 ※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및 국내거주 사실확인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상기 제 증명서류 중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 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①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②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로 확인한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④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공무원연금공단)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잔금납부기한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공무원연금공단)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공무원연금공단) 및 계약자가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합니다.

■ 입주잔금 납부기한 : 2026. 01. 26.(월) (계약체결기간 만료일로부터 45일 이내 납부)

- 잔금납부는 계약체결 시 안내해드리는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완납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잔금은 계약체결기간 만료일로부터 45일인 2026. 01. 26.(월) 이내에 계약금을 입금한 납부계좌(공고문 P.13)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2101동 901호 홍길동 → 2101901홍길동

▪ 상기 기한까지 입주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잔금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계약금 상당)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잔금에 대한 대출은 당첨자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입주잔금 연체시 적용 연체이율 : 연 7.32%* (공고일 기준)]

입주잔금 납부기한 이후에 잔금을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 **2026년 1월 중 연체이율 확정 시 추후 변동 예정**

* 한국은행에서 당해연도 1월 발표하는 공공 및 기타부문 대출금리(4.32%) + 공단 주거래은행의 연체가산율(3%) = 7.32%

→ 공단 부동산운영규칙 제15조의5(임대료 등의 연체이율) 제1항에 따라 연체이율 산출

■ 관리비예치금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합니다. (관리비예치금액은 계약자에게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입주 시 잔금(완납)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가 불출(입주)되며, 입주일 (열쇠불출일 기준)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잔금납부기한까지 미입주 시는 잔금납부기한 마지막날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청약홈 홈페이지, 모집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되어 당첨자로 전산 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은 모집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모집공고문의 순위별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접수 시 기재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세대개방일정 내에 세대를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공무원연금공단)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 가입하거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8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9 사업주체, 시공사 안내 및 공급문의

사업주체

공무원연금공단

◈ 사업주체 : 공무원연금공단

◈ 사업자등록번호 : 220-82-00935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 공급주택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 119, 별내리슈빌 아파트

◈ 홈 페 이 지 : https://www.geps.or.kr

시공사	
KR산업	◈ 상호명 : ㈜케이알산업 ◈ 사업자등록번호 : 126-81-05325 ◈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42-1, 1층

구 분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및 유의사항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신청방법, 청약절차, 당첨자선정 및 추첨 등	청약홈 콜센터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실	단지 관련사항, 세대개방일정,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계약, 잔금 등	02-560-3461, 02-560-2412 (남양주 별내리슈빌 분양전환 담당)